

번호 I-14

제 목	국문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일부 개원의사와 보건의료전문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	Cognitive Discrepancies of the revision of medical law in Korea - A Comparison between Some Medical Practitioners in Clinic and Health Professionals in College of University -					
저 및 저자 소속	국문	김춘배, 고광욱*, 이인영**, 박창호***, 김현국***, 심재욱***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고신대의학부*,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원주시의사회***					
	영문	Chun-Bae Kim, Kwangwook Koh*, In-Young Lee**, Chang- Ho Park***, Heon-Kook Kim***, Jae-Wook Shim***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Kosin Medical Colleg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Wonju Medical Association***					
분야	보건 관리 (0) 역학 () 환경 ()	발표자	일반회원 (0) 전공의 ()	발표 형식	구연 () 포스터 (0)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0)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2월						

1. 연구 목적

현행 의료법이 작금까지 1차의 전면개정 및 13차의 부분개정이 되어오면서 나름대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응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의료법의 문제점 및 개정에 관한 개원의사 및 보건의료전문가간의 인식을 비교·조사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조사방법

- 1) e-mail을 통한 quick survey: 대한예방의학회 회원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 254명 (응답률 7.5%)
 - 2) 직접 배포에 의한 설문조사: 원주시의사회 회원 80명(응답률 42.5%)
- 나. 조사기간: 2000년 7월 ~ 8월
- 다. 조사내용: 의료법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 빈도분석 및 내용분석

3. 연구 결과

[총칙 부문]

가. 의료인의 규정

- 1) 조산사 및 조산원의 기능 재평가 필요
- 2) 보건의료인의 규정 제한 및 공통 권리의무 필요
- 3) 의사의 임무 조정 : 보건지도의 구체화, 타직종에 대한 지도·감독 구체화 등
- 4) 간호사의 임무에 대한 의무 규정 명확화

나. 의료기관의 규정

- 1) 의료기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병원의 평가기준 제정 등
- 2)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대한 판단기준 연계
- 3)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의무 규정 추가
- 4) 보건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기능 추가

[의료인 부문]

가. 자격과 면허

- 1) 의료인의 일부 결격사유의 명료화
- 2) 국가시험 관계 전문기관의 자율성 보장
- 3) 조건부 면허 규정의 폐지

나. 권리와 의무

- 1) 진료비의 압류금지필요
- 2) 실질적인 진료선택권의 확보
- 3) 진료거부 금지의 규정 변경 또는 수정
- 4) 정당한 진료거부의 사례 예시
- 5) 태아의 성감별 행위시 양별규정 신설
- 6)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인정
- 7) 변사체의 신고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

다. 의료행위의 제한

- 1) 의료행위 정의의 명확화
- 2)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례 예시
- 3)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사례 예시
- 4) '대체의학' 시술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에 대한 검증, 책임소재 명시 등

라. 의료인단체(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 1) 의료인단체의 기능 보완
- 2) 의료인단체별 직업윤리 추가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의 개설

- 1) 사이버 진료의 범위 한정 및 기록보존 규정강구, 원격단말기나 원격의료시스템에 대한 공인 및 법적 책임 규정 명확화
- 2) 보건의료기관 개설 형태의 다양화
- 3)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자율화

나. 의료기관 명칭의 혼동 개선 : 의료원, 보건의료원 등

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육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강구

라. 의료법인

- 1) 의료법인 운영형태의 검증 없이 일률적인 법인세 부과하는 점 개선

[의료광고]

가. 과대광고 등의 범위 재 검토 : 경력이나 세부전공을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허용

나. 광고 방법 및 광고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평가, 제한하는 체계 필요

[분쟁조정, 보칙 및 벌칙]

가. 의료분쟁 관련 규정 및 중앙회의 공제사업 조항의 조정

나. 전문간호사 등의 임무와 처벌 조항 명시

다. 행정처분(청문 포함)의 절차 간소화

라. 가중한 형량의 조정

마. 과태료 규정의 조정, 신설(의무기록의 절취 시)

4. 고찰

- 짧은 기간에 한정되어 설문 조사되었고,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편이의 문제가 있음. 또한, 응답자간에 의료법에 대한 인지도의 변이가 심하였고, 조사 항목중 무응답 항목의 비율이 높아 사전교육 등을 통해 의료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식 수준 향상 후에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됨